

경찰재난관리규칙 상 경찰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정책적 제언*

Policy Suggestions for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by the Police Disaster Management Rules

Ho Dae Cho**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oon Chun Hyang University, Asan, Chungnam, Korea

Abstract

Responsible for functions such as order maintenance, crime control, stability maintenance management executive who mainly police. And police were charge to solve various environmental features and to promote a positive, proactive change and development in modern times. Therefore, I attempt to discuss the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in disaster management rules and regulations in polic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ssociated with the activity of the police and the emergency. First, there is a need for adjustment of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emergency depart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mission is to enable police regulations for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Second, police organization must strengthen disaster prevention and police training. The police are also in the disaster response training related to the riot, but require substantial training needs education. Third, they must establish a flexible partnership with relevant organizations.

Key words: The police disaster management rules. disaster police, police officers, police training & education, Risk Management Center, police disaster management unit.

국문초록

경찰은 단순한 집행·관리 기능을 주로 하는 질서유지, 범죄통제 등의 안정 유지자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환경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결하며 적극적·능동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변화담당자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재난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재난대응 활동에 대해서 고찰을 시도하였다. 경찰의 재난과 관련되는 활동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려되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Tel. +82-41-530-1192. Fax. +82-41-530-1158. E-mail. jhd30@sch.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uly. 14, 2014 / Revised: July. 25, 2014 / Accepted: July. 30, 2014

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재난 담당부서의 조직과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과 예방이 전개될 수 있도록 조직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의 재난 활동에 대한 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임무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예방활동과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난예방활동은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에서 논의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의 대응에 있어서 시위진압과 연관되는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주제어: 경찰재난규칙, 재난경찰, 경찰공무원, 경찰재난 교육훈련, 위기관리센터, 경찰재난관리부대.

1. 서론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자연재난이나 인위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재난과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이재은 외, 2006: 241).

국가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그 정도를 완화시키는 모든 조치를 위하여야 하며,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통해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재난상황이 지난 후에는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여 원상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채경석, 2007: 19).

그 동안 우리는 다양한 재난을 경험한 바 있으며 현재도 전국 도처에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재난관리에 대비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재난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안일한 행정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는 그 실현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 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통제, 질서유지 외에도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와 정보기술의 급속한 진전 등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일탈행동의 증가는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봉사행정 요구의 증대로 이어져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한 치안수요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찰은 단순한 집행·관리 기능을 주로 하는 질서유지, 범죄통제 등의 안정 유지자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환경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결하며 적극적·능동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변화담당자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즉, 경찰이 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경찰은 2012년 12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찰재난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직적 체계화와 재난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한 사전 재난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재난 발생시 경찰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6장에 의거 경찰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인명구조 등 지원임무와 재난현장에 대한 현장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역할은 어느 정도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재난관리규칙을 분석하여, 재난발생 시 재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더 충실하면서 재난예방에 있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1) 헌법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¹⁾에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사회질서를 극도로 위태롭게 함으로써 공공 질서의 유지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6항²⁾에는 국가기관에 속하는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 활동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 법률

경찰법 제3조³⁾의 경찰의 임무에서는 경찰의 임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정의하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대한 임무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경찰 목적에 포함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는 경찰관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고·압류·피난, 기타의 조치

-
- 1)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2)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경찰법 제3조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를 취할 수 있고, 위험한 사태로서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이재민을 구조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박내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관직무응원법 제1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의 경비에서 그 소관 경찰력으로서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을 받기 위해 다른 지방경찰청의 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난 발생 시 경찰재난관리부대의 파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3) 명령 및 규칙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관련된 각종 법률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사항에 관한 내용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수난구호법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기동대운영규칙, 경찰비상업무규칙, 경찰지휘본부운영규칙, 비상소집규칙, 경찰항공운영규칙, 재난관리시행규칙에도 재난관리상 경찰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해 놓고 있다.

2. 경찰재난관리규칙 상 주요사항

1) 재난담당 부서 및 기능

(1) 적용범위

경찰재난관리규칙 제3조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재난관리업무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2) 각 기능별 임무

경찰재난관리규칙 제4조 업무분담에 의한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한 각 국·관별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비국: 재난관리 업무총괄을 하며 자연재난 분야, 교통사고를 제외한 인적재난과 그 밖의 재난 분야 중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는 분야, 국가 기반체계 마비 분야 중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는 분야로 재난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재난대책본부 및 재난상황실 운영, 대민지원 조정 및 통제, 재난관리부대 교육훈련, 재난관리를 위한 경력운용 및 가용 장비 운용
- 기획조정관: 재난관련 부서 정원 확보, 경찰관서 피해복구비 산정, 재난관련 국회 업무 협조

- 경무국: 재난관련 경찰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시 업무처리, 재난지역 경찰장비, 물자, 수송지원 등 대민업무지원, 경찰관서 피해복구 업무 및 자체 경비
- 생활안전국: 재난취약지역 및 국가핵심시설 예방순찰. 재난지역 주민대피지원, 재난지역 현금다액 취급업소 등 범죄예방, 재난지역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 수사국: 재난지역 강·절도 등 형사활동, 재난원인에 대한 수사활동. 사상자 신원확인
- 정보국: 재난지역 주민 및 집단민원 등 정보활동
- 보안국: 재난지역 안보위해요소 점검 등 보안활동
- 외사국: 재난지역 체류외국인 관련 치안활동
- 대변인: 재난복구, 사고수습, 대민지원활동 등 대국민 홍보
- 감사관: 재난지역 경찰관 자체사고 예방
- 정보통신관리관: 국가적 정보통신 피해발생시 긴급통신망 복구지원, 재난지역 통신장비 설치 및 운영
- 교통관리관: 재난지역 교통통제 및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재난지역 교통안전시설 관리, 재난지역 교통정보 홍보활동, 인적재난 중 교통사고 분야

2) 재난대책본부 및 재난상황실

경찰재난관리규칙 제5조와 제6조에 의하면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하에 재난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재난대책본부장은 경비국장으로 하며, 전 국·관 서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또한 경찰재난관리규칙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비국장이 위기관리센터 등에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재난상황실장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하며, 근무자는 위기관리센터 소속 직원으로 한다. 또한 재난 상황실은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대민지원, 유관기관 협조 등 재난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재난관리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지휘본부

경찰재난관리규칙 제22조와 제23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재난상황 발생시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현장에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장지휘본부는 재난상황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재난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응급조치에 응하는 경력 및 장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고, 긴급구조 활동에 종사하는 경력 및 장비는 지역긴급구조통제

단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재난 예방·대비 및 교육·훈련

경찰재난관리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재난으로 인한 취약지역 및 시설물을 선정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재난예방 및 대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재난관리부대는 연 40시간 이상, 교통외근과 지역경찰과 같은 외근경찰관은 연 3시간 이상의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III. 경찰의 재난대응활동 현황

1. 태풍·장마 관련 활동 현황

우리나라 경찰의 2012년 태풍·장마관련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체계적 재난상황관리 및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태풍·집중호우 관련 상황에 따른 경찰활동을 강화하여 총인원 20,389명, 재난관리부대 252개가 피해복구에 지원되었다. 그 중 제주도의 경우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경찰관 5,222명이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재난관리부대 역시 78회로 가장 많이 지원하여 태풍·장마에 따른 피해 복구에 힘썼다.

<표 1> 태풍등 복구 관련 지역별 지원 현황

(단위: 명, 부대 수)

구분	계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명)	20,389	120	223	303	556	339	105	303	1,707	2,937	3,409	3,051	2,114	5,222
중대 (수)	252	-	-	4	11	4	-	-	25	33	36	37	24	78

※ 자료: <http://www.police.go.kr>.

2. 폭설 피해 복구 활동 현황

2012년은 1973년부터 관측한 이래 전국 평균 강수일수가 가장 많았으며, 대구의 경우 60년만의 12월 최대 폭설을 기록하는 등 겨울철 폭설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총력대응체계 가동 등 현장중심의 발빠른 대응으로 재산피해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었다.

경찰에서는 폭설피해 지역에 총 3,005명의 경찰력을 지원하여 도로·통행로 확보 및 비닐하우스 복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재난대응활동을 실시하였다.

<표 2> 폭설 복구 지역별 지원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울산	전북
인원(명)	3,005	1,680	1,005	1351	185
중대 수	41	21	12	4	4

※ 자료: 2013경찰백서(2013).

3. 산불 대비 활동 현황

경찰은 봄·가을철 계절별로 산불에 대비하여 ‘재난관리활동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산불 피해다발·우려 지역을 사전 파악하여 112순찰활동 강화로 산불 피해 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신속한 상황전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시 가용 경찰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산불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전과 제주도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시, 경찰관 등 총 506명의 인력을 산불진화에 지원하였고, 특히 2012년 4월 제주시 애월읍 ‘사제비 동산’의 산불에는 경찰 헬기 1대와 경력 187명이 출동하여 산림청 헬기 1대와 합동을 산불을 진화하는 등 협력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 및 기타 활동 현황

2012년에는 총 9건이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11명, 부상 56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경북 구미에서는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대책이 전면 재검토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당시 구미경찰서에서는 화학장비가 부족한 와중에도 139명이 출동하여 사고 현장 통제 등 초동조치에 노력을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의 인명보호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관련 매뉴얼 개선과 장비 지급 필요 등을 논의하였다.

2013년에는 화학 보호장비를 지급하여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환경부 등 유관기관에서 파악 중인 유해화학물 취급업소 현황과 취급요령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전파하고,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현장에 맞게 조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경찰청, 2013: 263-264).

IV. 경찰재난관리규칙에 대한 정책적 제언

1. 경찰 재난 담당부서 및 기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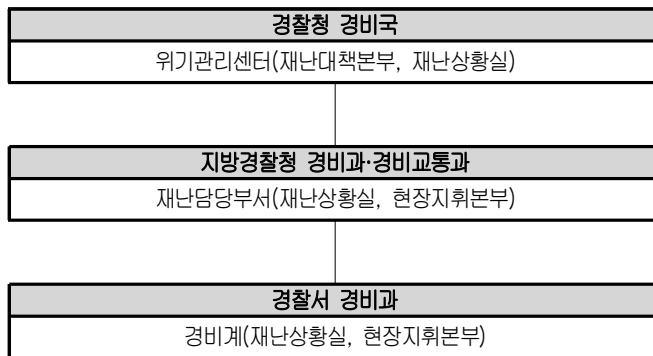
1) 경찰 재난담당부서 역할 재정립

경찰에서 재난 담당 부서는 아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청 경비국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와 지방경찰청 경비과 또는 경비교통과의 재난담당 부서, 그리고 경찰서 경비과의 경비계로 이어지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경비국 위기관리센터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 되는 “심각상태”에서는 경비국장이 반드시 위기관리센터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심·주의·경계단계”에서는 경비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기관리센터는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작전계, 테러를 담당하는 테러계, 치안상황실, 그리고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위기관리계로 구성되어 있어 재난에 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닌 담당업무의 중의 하나로 되어있다. 따라서 예방·대응·복구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재난과 테러 그리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재난상황실로 그 역할을 바꿀 수 있는 치안상황실만을 위기관리센터로 편제하고, 재난을 전담하는 인원을 늘여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방경찰청의 경우 경비과 또는 경비교통과에 작전의경계에 테러와 재난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두고 재난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데, 재난발생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지방경찰청의 경우도 경찰청과 같이 위기관리계를 만들고, 인원을 늘여 재난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끝으로 경찰서의 경우도 지방경찰청과 마찬가지로 경비과에 위기관리계를 두고 재난 및 테러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림 1> 경찰 재난관리 체계도

2) 재난예방임무 규정

재난경찰은 다른 경비경찰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첫째, 재난이 발생한 후의 대응 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합기능적 활동이다. 둘째 재난관리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 할 수 있으나, 정태적·소극적 질서유지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적극적 의미의 유지활동을 의미하는 현상유지적 활동이다. 셋째, 재난상황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므로 재난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대응할 수 없으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하는 즉시적 활동이다. 넷째, 재난경찰은 재난이 발생할 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한 조직적 부대활동이다(경찰공제회, 2013: 477).

이와 같이 재난경찰은 대응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재난관리규칙 제4조 재난관리 업무분담을 보면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재난발생시 각 국·관별 임무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반면 재난예방활동과 관련된 국·관별 임무에 관하여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재난관리규칙에 있어서 재난대응에 관한 임무와 예방에 관한 임무를 분리하지 않고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난대응 임무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반면 재난예방에 관한 임무는 거의 기술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방에 관한 부분을 대응과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2. 재난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강화

1) 재난예방활동 강화

현재 경찰의 재난 예방활동은 조리상의 한계인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으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는 경찰 목적에 따른 한계로서,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하는 것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경찰권 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경찰활동은 점차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복리증진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예방활동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또한, 경찰비례의 원칙으로 인하여 경찰권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허용되는 활동상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재난 예방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난 예방활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지역경찰관을 활용한 재난예방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찰관의 대부분은 순찰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순찰활동에 재난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시켜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경찰의 활동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안정보 수집에

재난정보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치안정보의 수집과 작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난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서 경찰에서 꾸준히 예방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재난관련 실질적인 교육훈련 실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의 재난대응은 대부분 전·의경 부대로 구분하여 기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난관리부대는 실질적으로 시위진압부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육훈련은 시위진압훈련인 경우가 많다. 이는 실질적인 교육훈련의 부족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난 발생시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경찰은 재난관리부대와 외근경찰관 등 총 40,212명을 대상으로 산불·화재, 수해, 산악구조, 구명환 투척방법, 로프 매듭법, 응급처치 등의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방경찰청장은 재난관리부대의 경우, 연 4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근경찰관의 경우, 재난으로 인한 취약지역 및 시설물을 선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바,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외근경찰과 지역경찰의 경우 연 3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9조).

<표 3> 재난관리부대 현황

(단위 : 부대수)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95	37	18	12	12	7	7	6	45	19	14	18	18	24	27	27	4
중대	27	4	1	1	1	1	1	1	2	2	1	2	2	2	2	3	1
경찰관 기동대	19	2	2	2	2	1	1	1	2	-	1	1	1	1	1	1	-
112 타격대	249	31	15	9	9	5	5	4	41	17	12	15	15	21	24	23	3

※ 자료: 2013경찰백서(2013).

3. 재난대책본부와 재난상황실, 현장지휘본부의 유기적 관계 정립

재난과 관련되어 경찰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경찰청은 재난의 최고 통솔기관인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지방경찰청이 실질적인 재난상황실의 주체로서 활동하게 되고, 지방경찰청장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했을 시, 지방경찰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재난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성이 높은 지역의 경찰서에는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지원과 대응이 가능토록 운영되어야 하며, 지방경찰청은 발생된 재난에 대해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즉, 관할 경찰서는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지휘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과 관련되는 기관과의 연계 및 재난대책본부, 재난상황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도 역시 엄청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을 떠나 국민들에게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준다.

재난이 발생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지만, 재난예방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역할과 그에 맞는 활동이 필요하다. 재난의 예방은 부서나 기관의 업무 범위, 관할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노력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과거부터 단순한 집행·관리 기능을 주로 하는 질서유지, 범죄통제 등의 안전 유지자로서의 기능으로 그 임무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능동적인 작용을 필요로 하는 재난에 대하여서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재난 발생시 국가적인 체계에 있어서 경찰은 재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원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역할에 경찰 스스로 한정하는 것은 사회변동에 따르는 환경으로부터의 조건을 해결하며 변화·발전을 자발적으로 도모하는 변화담당자로서의 기능까지 요구되는 경찰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재난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재난대응 활동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경찰은 헌법과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상의 업무 영역에서 재난에 대해 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재난대응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부대와 외근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국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과 관련되는 활동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재난 담당부서의 조직과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과 예방이 전개될 수 있도록 조직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의 재난활동에 대한 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임무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임무와 예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경찰에게 활동상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는데 한계를 보

일 수 밖에 없다. 둘째, 재난예방활동과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난예방활동은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에서 논의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의 대응에 있어서 시위진압과 연관되는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경찰 본연의 임무와 재난 발생시 필요한 경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관계를 정립하여 준비태세를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재난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의 재난 대응활동도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채경석, 2007. 위기관리정책론. 과주: 대왕사.
이재은 외, 2006. 재난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재난규칙.
경찰공제회. 2013. 경찰실무종합. 경찰공제회.
경찰청. 2013. 2013경찰백서.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조호대: 동국대학교에서 경찰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재난관리상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현재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찰인사, 재난관리, 위기관리, 경찰운용, 경찰조직 등이며 한국경찰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수사경찰의 멘토링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1)”, “사회안전을 위한 CCTV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0)”, “우리나라 경찰의 잠재청렴도 향상방안(2009)”, “우리나라 테러방지관련법에 관한 연구(2007)” 등이 있다(jhd30@sch.ac.kr).